

의안번호	제 766 호
의 결 연 월 일	2018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
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8년 1월 9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766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8년 1월 9일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관련 법령 '항공사업법' 시행('17. 3.)에 따른 인용 조문 개정
- 사업 유형 및 주체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특정한 지원금 교부 방법 삭제

2. 주요내용

- 관련 법령 인용 조문 개정 (안 제1조 및 제2조)
 - 항공운송사업 진흥법 제3조 → 항공사업법 제65조
 - 항공법 제2조제31호 → 항공사업법 제2조제8호
 - 같은법 제2조제32호부터 제34호까지 → 제2조제9호·제11호 및 제13호
- 특정 지원금 교부방법 삭제 (안 제7조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취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 「항공운송사업 진흥법」 제3조”를 “ 「항공사업법」 제65조”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 「항공법」 제2조제31호”를 “ 「항공사업법」 제2조제8호”로, “같은 법 제2조제32호부터 제34호까지”를 “같은 법 제2조제9호·제11호 및 제13호”로 한다.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(지원금 교부) 항공사업자 또는 공항활성화 사업자로부터 제6조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지원금을 교부한다.

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□ **신구조문 대비표**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<u>항공운송사업 진흥법</u>」 제3조에 따라 청주국제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사업자와 공항활성화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편익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</p>	<p>제2조(목적) ----- 「<u>항공사업법</u>」 제65조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항공사업자”란 「<u>항공법</u>」 제2조 제31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을 하는 자(외국인 국제항공사업자를 포함한다)로서 청주국제공항을 발착지 또는 경유지로 하여 같은 법 제2조제32호부터 제34호까지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.</p> <p>2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「<u>항공사업법</u>」 제2조제8호----- ----- ----- ----- 제2조제9호·제11호 및 제13호 ----- -----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7조(지원금 교부) <u>항공사업자 또는 공항활성화 사업자로부터</u> 제6조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지원금을 교부한다.</p>	<p>제7조(지원금 교부) <u>항공사업자 또는 공항활성화 사업자로부터</u> 제6조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지원금을 교부한다.</p>

현행	개정안
<p>1.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: 지원 결정 당시 제4조에 따른 협의 사항 준수 여부를 심사한 결과에 따라 교부한다.</p> <p>2. 제3조제4호의 경우 : 사업 착수 또는 교부 결정 시에 교부한다.</p>	

관련법령 발취

□ 항공사업법

제2조 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8. “항공운송사업자”란 국내항공운송사업자,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및 소형항공운송사업자를 말한다.
9. “국내항공운송사업”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항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.
 - 가. 국내 정기편 운항 : 국내공항과 국내공항 사이에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인 운항계획에 따라 운항하는 항공기 운항
 - 나. 국내 부정기편 운항 :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가목 외의 항공기 운항
11. “국제항공운송사업”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항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.
 - 가. 국제 정기편 운항 : 국내공항과 외국공항 사이 또는 외국공항과 외국공항 사이에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인 운항계획에 따라 운항하는 항공기 운항
 - 나. 국제 부정기편 운항 : 국내공항과 외국공항 사이 또는 외국공항과 외국공항 사이에 이루어지는 가목 외의 항공기 운항
13. “소형항공운송사업”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 외의 항공운송사업을 말한다.

제65조(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) ① 국가는 항공사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사업을 영위하는 자(이하 “항공사업자”라 한다)에게 그 소요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으로 융자하여 줄 수 있다.

1. 전쟁·내란·테러 등으로 항공사업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
2. 항공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 지방자치단체는 항공사업의 지원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항공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.